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84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한병도・황운하・진선미

양부남 · 김영배 · 이춘석

이해식 • 박용갑 • 이워택

정태호 · 위성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 고 있음.

그러나 '관공서'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,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「공직선거법」에 누락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'관공서'를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'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,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중 "官公署 기타"를 "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"로, "협조요구"를 "지시 및 협조요구"로 한다.

제5조(선거사무지시 등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5條(選擧事務協助) 官公署 기	제5조(선거사무지시 등) 국가기
<u>타</u> 公共機關은 選擧事務에 관	관,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
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협조요	<u>지시 및 협조</u>
<u>구</u>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	요구
이에 따라야 한다.	